

의안번호	제 275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8년 10월 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년 10월 6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
2. 주요내용

- 개념정의 신설 (안 제2조 제18호)
- 직제개편에 따른 국장 명칭변경(안 제17조제1항)
- 지원범위 확대 (안 제31조의2)
- 지원절차 규정 신설 (안 제32조)
-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요건 변경(안 제33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-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
-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
-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
-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“그 외 기업”이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지원 대상 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,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말한다.

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, 기금운용관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관련 담당과장이 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) ① 도지사는 그 외 기업이 별표3의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수도권 및 타 시·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
 2. 도내 소재 기업이 증설 투자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비, 임대료, 건축비, 건물취득비, 기반시설설치비, 시설장비구입비,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, 그 최고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지원절차) 제27조부터 제31조의2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지원한다.

제3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투자 완료 후 1일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
2. 투자금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경우
3.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 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(제31조의2 관련)

-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이고
- 1일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이며
- 투자 완료 후에도 1일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지원한도)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,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제33조(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</p> <p>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 할 수 있다.</p> <p>1. 1일 상시고용규모가 200인 이상이고,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투자기업</p> <p>2.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32조(지원절차) 제27조부터 제1조의2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지원한다.</p> <p>제33조(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</p> <p>2. 투자금액이 1,000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3.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대한민국 헌법

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, **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**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② 4. 거. **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**

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제9조 (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<개정 2000.12.29, 2002.12.30>)

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"소비성서비스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07.2.28, 2008.2.29>

1. 호텔업 및 여관업(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)
2. 주점업(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)
3. 그 밖에 오락·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

제60조의2 (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<개정 2008.2.22>)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"이전공공기관"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01.12.31, 2003.12.30, 2005.2.19, 2006.2.9, 2007.2.28, 2008.2.22>

1. 부동산임대업
2. 부동산중개업
3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
4. 삭제 <2007.2.28>
5. 건설업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)